

서울특별시종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울특별시종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24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 개정이유

식품진흥기금의 재원 구성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이 추가되고,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이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적용하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규정을 동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II. 주요골자

- 가. 식품진흥기금의 재원 구성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7조에서 규정한 과징금을 추가함(안 제3조 제1호).
- 나.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을 포상금으로 변경·확대함(안 제4조제6호 및 안 제12호).

III. 검토의견

1. 관계법령 검토

먼저 식품위생법 제71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보면 기금의 재원구성중 법 제65조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이 기금의 재원으로 추가(개정 2002. 8. 26 법 제6727호)되었고, 2003. 8. 18 동법시행규칙 제58조의2 포상금의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으며, 또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이 2002. 8. 26 제정(법률 제6727호)되어 동법 제37조에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동조 제4항의 규정에 과징금을 부과하여 징수한 과징금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고,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시·도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3. 11. 15자로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어 자치구에서도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조례를 개정 시행하도록 공문이 통보된 바, 이에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IV.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1조(식품진흥기금) ①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65조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금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8조의2(포상금의 지급기준) ①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조 내지 제6조, 제8조 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 30만원 이하
 2. 법 제7조제4항, 제9조제4항, 제16조제1항,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를 신고한 경우 : 20만원 이하
 3. 법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22조제5항,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 10만원 이하
 4. 법 제3조, 제22조제6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5항,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에 관한 교육명령에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 5만원 이하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법 규정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 3만원 이하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과징금 처분)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영업자가 제32조제1항 각호(제8호 및 제9호를 제외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또는 품목류제조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 후단, 제10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3조,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을 취소하고 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고,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시·도의 식품진흥기금(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을 말한다)에 귀속된다.

⑤시·도지사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